

##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 관한 조례 증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00. 6.  
제 출 자 : 이 천 시 장

### □ 제안이유

-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례회의가 연 2회 개최하도록 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5조,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·세출결산(기금운용포함)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를 이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

### □ 주요골자

-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시기를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서 80일이내로 단축하고,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의 시의회 제출기일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로 제출하도록 조정함  
(안 제13조제1항 및 제3항).
- 부칙조항에서 다른 조례의 기금 결산에 관한 일정을 변경함

이천시조례 제 호

##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중 “3월이내”를 “80일이내”로 하고, 동조제3항중 “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”을 “다음 회계연도개시 6월말일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조례의 개정) ①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·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중 “3월이내”를 “80일이내”로 하고, 동조제3항중 “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”을 “다음 회계연도개시 6월말일”로 한다.

②이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중제1항중 “3월이내”를 “80일이내”로 하고, 동조제2항중 “기금운용계획서와”를 삭제하고 “매 회계연도마다”를 “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”로 한다.

③이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·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중 “3월이내”를 “80일이내”로 하고, 동조제3항중 “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”을 “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”로 한다.

④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·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중 “3월이내”를 “80일이내”로 하고, 동조제3항중 “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”을 “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”로 한다.

⑤이천시4-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중 “3월이내”를 “80일이내”로 하고, 동조제3항중 “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”을 “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”로 한다.

⑥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중 “3월이내”를 “80일이내”로 하고, 동조제3항중 “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”을 “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p>제13조 (기금의 결산)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<u>3월이내</u>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<u>다음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</u>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3조 (기금의 결산)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<u>80일이내</u>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<u>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</u>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			